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38
----------	-----

제출연월일 : 2007. 6. 29.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대전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의 중복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전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의2).

나. 법령에 규정된 중복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07. 5. 4 ~ 5. 23(20일간) / 의견 없음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할 대전발전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법인격) 대전발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제8호중 “시”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원장”을 “대전발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대전발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원장”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대전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원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중 “법 제20조”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명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를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9조중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할 재단법인 대전발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할 대전발전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립운영) ①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조(법인격) 대전발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p>
<p>제3조(사업) (생략) 1.~7. (생략) 8. 시 및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 사업 수탁 9. (생략)</p>	<p>제3조(사업)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8.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 9. (현행과 같음)</p>
<p>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 ② (생략) ③원장은 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재산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p>	<p>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대전발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p>

현행	개정안
<p>제8조(이사의 추천) ①대전발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를 추천받는다.</p> <p>② (생략)</p> <p><신설></p>	<p>제8조(이사의 추천) ①원장-----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2(대전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대전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p> <p>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원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p> <p>⑥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⑦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1조(자료의 제공) ①연구원은 시장에게 시정과 관련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삭제></p>
<p>제12조(사업계획 등 승인)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삭제></p>
<p>제13조(시정요구) 시장은 법 제20조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13조(시정요구)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p>
<p>제15조(준용) 연구원의 설립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삭제></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 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3.3 법률 제7858호]

제19조 (경영평가 등) ①시·도지사는 지방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에는 지방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6.3.3][중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06.3.3>]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8.29 대통령령 제19663호]

제10조 (지방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 ①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경영평가기준의 설정
2. 경영평가대상의 선정
3.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지방연구원의 경영 및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및 경영평가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3. 4급 이상의 시·도 소속 공무원

④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8.29]